

## 2018. 6. 13(수)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

| 시행일정               | 요일     | 실시사항   | 기준일  | 관계법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15까지            | 월      | 인구수 등의 통보  | 인구의 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<br>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<br>15일까지         | 법§4, §60의2①<br>규§2①②, §118①   |
| 2. 3까지             | 토      | 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<br>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|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| 규§51①②<br>규§26의2③             |
| 2. 13부터            | 화     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<br>[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  | 선거일 전 120일부터   | 법§60의2①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2부터             | 금     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<br>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   |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| 법§60의2①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15까지            | 목      | 각급선거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,<br>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<br>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| 선거일전 90일까지   | 법§60②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| 선거일전 90일까지[비례대표지방의원<br>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:<br>5.14(월)] | 법§53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15부터<br>6. 13까지 | 목<br>수 | 의정활동 보고 금지   |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 | 법§111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1부터             | 일     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<br>[군의원 및 장의 선거]  |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| 법§60의2①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14부터<br>6. 13까지 | 토<br>수 |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|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| 법§86②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22부터<br>5. 26까지 | 화<br>토 | 선거인명부 작성   |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 | 법§37, 규§10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<br>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법§38, 규§11<br>법§65⑤           |
| 5. 24부터<br>5. 25까지 | 목<br>금 | 후보자등록 신청<br>(매일 오전9시 ~ 오후6시)   |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 | 법§49<br>규§20                  |
| 5. 30까지            | 수      | 선거벽보 제출 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| 법§64②<br>규§29④                |
| 5. 31              | 목      | 선거기간개시일 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| 법§33③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31부터<br>6. 12까지 | 목<br>화 |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개최   | 선거운동기간중  | 법§82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1까지             | 금      | 선거공보 제출 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| 법§65⑥<br>규§30⑤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선거벽보 첩부  |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| 법§64②<br>규칙§29②⑤              |
| 6. 1에              | 금      | 선거인명부 확정   | 선거일전 12일에  | 법§44①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3까지             | 일      |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| 선거일전 10일까지   | 법§147⑧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거소투표용지 발송<br>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 | 선거일전 10일까지   | 법§65⑥, 154①⑤,<br>규§7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 |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| 법§65⑥, 153①,<br>규§76          |
| 6. 8부터<br>6. 9까지   | 금<br>토 | 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  |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| 법§155②, §158                  |
| 6. 13              | 수      | 투표 (오전 6시 ~ 오후 6시)<br>개표 (투표종료후 즉시)  | 선거일  | 법 제10장<br>법 제11장              |
| 6. 25까지            | 월      | 선거비용 보전청구  | 선거일후 10일까지(개표의 말일이 토요일<br>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                | 법§122의2①,<br>법§161<br>규§51의3① |
| 8. 12이내            | 일      | 선거비용 보전  | 선거일후 60일 이내  | 법§122의2①<br>규§51의3②           |